

등록번호	총무과-27742
등록일자	2015.8.27.
결재일자	2015.8.27.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주무관	인사팀장	총무과장	행정관리국장	부구청장
임소영	문영일	김종석	박희균	전결 08/27 代박희균
협 조				

2015년 하반기 서울시 실적기점 자체심사 계획



행정관리국
총 무 과

2015년 하반기 서울시 실적가점 자체심사 계획

『2015년 하반기 서울시 실적가점 평가 추진계획』에 따라 탁월한 근무실적으로 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인 직원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자체심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I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 2
- 2015년 하반기 서울시 실적가점평가 추진계획(서울시 인사과-24253)

II 실적가점 개요

- 평가대상기간 : 15. 4. 1 ~ 15. 9.30 [6개월]
- 부여대상 : 서울시 통합인사대상 전산직 7급 이하 및 기술직 5급 이하 공무원
- 추천인원 : 기관별 통합인사대상 현원의 5%이내
※ 우리 구 추천 가능인원 : 11명(시 통합인사대상 현원219명의 5% 범위 내)
- 분 야 : 사업실적(사업당 5점 이내), 개인실적(1인당 1.2점 이내)

부문	선정대상	부여점수
사업실적	중점과제, 역점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업 선정	사업당 최고 5점 (1인당 1.5점 이내)
개인실적	일상업무혁신, 주민편의증진, 격무·기피업무, 기타	1인당 1.2점 내외

- 가점활용 : 승진후보자 명부 반영(근무성적평정점수 반영기간 및 비율만큼 반영)
- 추천방법 : 기관별 자율결정
 - 사업실적 또는 개인실적에 대한 신청분야 비율은 기관별 자율 결정하되, 사업실적을 70% 내외로 신청(※ 우리구 최소 사업추천인원 : 8명)
 - ‘사업참여자 + 개인신청자’ 수는 기관 추천가능 인원내로 제한

추천 중점사항

- 계획보다는 실행·사업완료 등 성과를 거둔 실적 중심으로 추천
- 시책사업뿐 아니라 서민생활과 직결된 일선현장, 민원부서의 창의적 업무 개선 사례 등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사례 발굴

부여기준(기본원칙)

- 추천인원의 70%내외의 인원에 대해 실적가점대상자를 선정하되, 제출된 사업·개인실적 평가에 따라 부여인원 조정 가능
- 역점사업과 팀워크활성화를 위해 전체 선정인원 중 70% 내외를 사업실적에서 선정
- 개인별 신청분야는 사업실적 또는 개인실적 중 택일
- 동일사업으로 「서울창의상」 과 중복되어 실적가점을 받을 경우 개인별로 높은 점수 1건만 인정
- 사업실적 신청의 경우 사업참여자는 2명이상 5명 이내로 하며, 기여도는 주참여자는 30%, 보조참여자는 20% 이내로 제한

《 평가부문별 세부 부여기준 : 5개 분야 》

평가 부문	주요 내용	등급별 점수				비고
		S	A	B	C	
사업 실적	① 중점과제, 시·구 역점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복지, 경제, 문화, 안전, 소통 등)	5	4	3	2	· 1인당 1.5점 이내
개인 실적	① 일상업무 혁신분야 - 세수증대, 제도·기술개선 등을 통한 예산 절감에 기여한 직원	1.2	1.0	0.7	0.5	· 예산절감액, 파급효과 등을 고려 평가
	② 주민편의 증진분야 - 고질민원 해결, 주민과의 원활한 갈등 해결에 기여한 직원	1.2	1.0	0.7	0.5	· 민원건수와 지속기간 등 고려 평가 (소송업무는 제외)
	③ 격무·기피업무분야 - 격무·기피업무,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직원	1.0	0.7	0.5	0.3	· 실적인정위원회에서 인정하고 근무기간 등 고려 평가
	④ 기타 특수공적분야 - 실적인정위원회에서 특수공적을 인정한 직원	0.5	0.3	0.2	0.1	·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한 엄격하게 심사 적용

III 자체심사 계획

실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구 성

- 위원장 : 부구청장
- 위 원 : 국·소장, 총무과장
- 역 할 : 실적가점 추천자 선정, 이의신청 심사

실적심사위원회 실적 심사

- 심사일시 : **2015. 9. 4(금) 14:00 예정**
- 심사내용 : 우리 구 실적가점 추천자 선정 및 분야별 순위결정
 - ↳ 추천 가능인원 기준충족을 위해 사업실적의 경우 참여자 수 등 조정가능
- 심사방법 : 추천 중점사항과 실적가점 부여 기본원칙 반영 심사
- 심사기준(【붙임 2】 참조)

구분	분야	지표 등
사업실적	사업성격 (1 0 %)	중요도, 난이도
	사업성과 (4 0 %)	달성도, 효과성
	추진역량 (3 0 %)	노력도
	시정기여도 (1 5 %)	영향력
	심사위원평가점수(5%)	심사위원 종합평가 점수
개인실적	추진역량 (4 0 %)	업무개선 노력도
	추진성과 (4 0 %)	효과성, 달성도
	시정기여도 (1 5 %)	영향력
	심사위원평가점수(5%)	심사위원 종합평가 점수

결과공개 및 이의신청 접수·처리

- 결과공개 : **서울행정포털시스템 “업무공지”란 게시**
- 이의신청 : 결과공개 시 부터 2일 이내(※ 공개일 포함)
 - 대 상 : 무임승차기여도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 추천대상 결정사항
 - 방 법 : 실적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서(서식2) 제출
 - 심사결과

구분	처리방법	비고
기 각	신청직원에게 기각사유와 재심 신청방법 통보	
인 용	자체 선정 의결 결과에 반영 및 기관 공지	

- 재심신청 :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

- 대 상 : 무임승차기여도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추천대상 결정사항은 제외)
- 방 법 : 재심신청서(서식2) 제출(⇒ 서울시 인사과)
- ☞ 이의신청 및 재심청구는 기간 도과 시 청구 불가

IV 추진일정

- 실적가점 신청자 선정·추천【총무과 ⇒ 서울시 인사과】
 - 실적가점 신청자 수합 : 15. 9. 2(수) 12:00까지
 - 실적심사위원회 개최 : 15. 9. 4(금), 부구청장실
 - 심사결과 공개,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15. 9. 9(수)한
 - 실적가점 신청서 등 전산입력 및 제출 : 15. 9.10(목)한
- 실적가점 추천자 실적 심사【서울시】 : 15. 11.10(화)한
- 15년 하반기 실적가점 심사결과 공개【서울시】 : 15. 11. 13(금)한

V 행정사항

- 실적가점 신청사업 제출 : 15. 9. 1(화) 12:00까지
 - 제출서식 <서식1>(※ 원본제출 및 담당자 메일발송 병행)
 - 사업실적 : 실적가점 부여신청서(사업실적), 실적가점 참여현황, 사업실적 개요서
 - 개인실적 : 실적가점 부여신청서(개인실적), 개인실적개요서
- 가점 부정취득 사례에 대한 페널티 제도 전 직원 대상 부서별 자체교육 실시 : 15. 9. 1(화)

가점 부정취득자에 대한 페널티 제도

- 부정취득자 등 부정사례에 대한 페널티 내용 전 직원 교육실시 : 부서장
- 부적격자(부정행위자)에 대한 페널티 강화

- ▶경과실일 경우 당기 가점 미부여, 고의·중과실일 경우 기존 가점 박탈
- ▶2회 적발시 위반자가 기 취득한 모든 가점 박탈 및 향후 3년간 가점 부여대상에서 제외
- ▶동일 사업에서 위반자 2회 발생시, 해당사업 참여자 전원 가점 박탈 (참여자 전원 연대책임)
- ▶승진심사시 심사자료에 반영하고, 기 인사상 혜택을 받은 경우 승진예정자 승진취소, 감사관 징계요구 등 처벌강화

- 부서장에 대한 페널티(연대책임)

- ▶위반건수 1건당 부서장 성과상여금(연봉) 지급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소속 직원 중 부정취득자가 2회 이상 연속 발생시, 향후 2년간 성과상여금(연봉) 최저등급 배정

- 붙 임 1. 2015년 하반기 서울시 실적가점평가 추진계획
2. 첨부자료. 끝.